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(주) 이사회 규정

제정 2007 년 04 월 01 일

개정 2013 년 03 월 22 일

개정 2014 년 05 월 27 일

개정 2015 년 03 월 05 일

개정 2016 년 03 월 25 일

개정 2016 년 12 월 13 일

개정 2019 년 02 월 28 일

개정 2021 년 03 월 29 일

개정 2022 년 12 월 19 일

개정 2024 년 03 월 25 일

개정 2025 년 09 월 25 일

개정 2026 년 05 월 07 일

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이사회(이하 이사회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12 년 일부개정)
(2026년 일부 개정)

제 2 조 (적용범위)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 (권한)

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, 본 규정 제 12 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 (2015 년 3 월 개정)
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④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 (2015 년 3 월 추가)
⑤ 제 3 조 제 4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(2015 년 3 월 추가)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(구성)

이사회는 이사 전원(독립이사, 기타 비상무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 (2015 년 3 월 개정) (2026년 5월 개정)

제 5 조 (의장)

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② 이사회 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, 정관 제 33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(2015 년 3 월 개정)

제 6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①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. (2021.3.29 신설)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(종류)
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 회 개최한다. (2015 년 3 월 개정)

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(소집권자)

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 단, 의장이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 5 조 2 항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(2015 년 3 월 추가)

제 9 조 (소집절차)

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그 회일을 정하고 7 일전에 이를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 (2016.3. 25 개정) (2021.3.29 개정)

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은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의사의 진행)

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,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1 조 (결의방법)

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 398 조(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(2013 년 3 월 개정)

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(2015 년 3 월 개정)

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2 조 (부의사항) (2015 년 3 월 개정)

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**주주총회에 관한 사항**

- 주주총회의 소집
- 영업보고서의 승인
- 재무제표의 승인
- 정관의 변경
- 자본의 감소
-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이사,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- 현금,주식,현물배당 결정
-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이사의 보수
- 법정준비금의 감액
-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**경영에 관한 사항**

-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공동대표의 결정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
-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
-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-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, 준법통제기준의 제·개정 및 폐지 등
- 이사회규정 등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- 지점, 공장, 영업소, 사무소 등의 설치·이전 및 폐지

  단,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부의대상에서 제외함

  (i) 국내사무소의 설치·이전 및 폐지

  (ii) 해외사무소의 동일 국가내에서의 이전
- 간이합병, 간이분할합병,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
-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
- 당년도 업적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 승인
- 경영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
- 재무담당 최고임원의 선임
- 중간배당의 결정
-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정
- 주주명부 폐쇄 기간의 결정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-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- 결손의 처분
- 신주의 발행
-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
- 준비금의 자본전입
- 전환사채의 발행

-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-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
- 자기주식의 소각
- 자산재평가
- 중요한 계약의 체결 (2016 년 12 월 13 일 개정)
  (i)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의 10% 이상의 국내 개발사업 계약 및 수출계약의 체결
  (ii)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의 1% 이상의 손실충당금 설정이 예상되는 계약의 체결
- 중요한 대규모 투자 (200 억원 이상)
  단 사업계획 승인시 포함되지 않았던 투자의 경우에는 100 억원 이상
  (2016 년 12 월 13 일 개정) (2024 년 03 월 25 일 개정)
- 다액의 자금차입(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5.0% 이상),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행위(200 억원 이상) (2025 년 09 월 25 일 개정)
- 일정규모 이상의 출자 및 처분 (자회사 포함, 100 억원 이상),
  자산의 처분 (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.0% 이상)
  (2016 년 3 월 25 일 개정) (2024 년 03 월 25 일 개정)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대규모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
  (2025 년 09 월 25 일 신설)

4. 이사 등에 관한 사항

-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
-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승인
- 이사의 경업 승인

5. 기 타

- 주식매수선택권 취소

-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 (2022 년 12 월 19 일 신설)
-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3 조 (위임)

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

제 14 조 (의사록)

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.

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 (2015 년 3 월 개정)

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 (2015 년 3 월 개정)

제 15 조 (사무국)

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,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,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 5 장 이사회내 위원회 (2013 년 개정)

제 16 조 (위원회의 설치)

회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 17 조 (위원회의 구성)

위원회는 이사회의 이사 중에서 2 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 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제 18 조 (위원회의 권한)

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제 19 조 (위원회의 결의 및 운영)

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 받은 이사는 이사회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다만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 년 3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 년 5 월 27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27 일 정기주주총회의 정관개정안 승인 후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 년 12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 년 12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 년 03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이 규정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 년 09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 년 05 월 07 일부터 시행한다.

단, 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